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26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신정훈
윤준병 · 한준호 · 차지호
이광희 · 김문수 · 정태호
김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4조 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세”를 “통합특별시세·광역시세”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 및”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 및”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 및”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